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의 제안: 전환기 적극적 시민을 위한 안전장치*

석재은**

요약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은 누구나 근로생애 기간 중 스스로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최소한의 충분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이용권 구상은 전환기에 필요한 제도이다. 이는 현행 한국의 사회보장체계가 직면한 한계를 보완하고 균열을 메우는 점진적이고 온건한 접근이면서도 개개인의 안정적 기본생활을 기반으로 적극적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도전적 행보를 지원하는 전향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 또한 위험의 개인화로 높아지는 불안속에서 개인의 진정한 자유를 지원하면서도 도덕적 해이보다는 도덕적 시민을 견인하는 정부의 넛지 역할을 담고 있다. 안정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도전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이용권 제안은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불확실하지만 상당한 기회를 담고 있는 발전적 미래에 부합하는 대안일 수 있다. 또한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제는 현행 사회보장체계와 잘 조화되면서도 기본소득의 도입 관련 여러 쟁점을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미래 사회보장 및 분배체계에 대한 좋은 정책실험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 개인화, 도덕적 시민, 적극적 시민, 넛지(nudge)

* 제주연구원의 [기본소득의 현실적 적용모형 연구] 일환으로 연구하였음. 또한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3926989).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seokje@hallym.ac.kr)

1. 서론

COVID 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의 대안적 사회보장체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정책의 창(Policy window)을 앞당겨 열어주었다.¹⁾ COVID 19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 위기는 그동안 가려져있던 일자리의 불안정성과 위기의 불평등한 영향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²⁾ 광범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확인은 사실상 안정적으로 고용된 집단만을 포괄하는 고용보험의 한계, 더 나아가 사회보험방식의 사회보장체계가 지닌 한계를 널리 인식시키며 대안적 사회보장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전체를 포괄하는 전국민고용보험에 대한 대안 마련 논의가 청와대로부터 시작해 고용노동부 및 기획재정부 등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한편(권순원, 2020; 장지연, 홍민기, 2020),³⁾ 4차 산업혁명의 영향 등으로 일각에서 논의되던 기본소득 논의가 급속히 결합되며 기본소득이 대안적 사회보장체제 논의의 전면에 등장했다.

기본소득은 디지털자본주의 시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지능정보기술 혁명,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더욱 광범하게 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으나, COVID 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 논의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훌쩍 앞당겨져 우리 사회의 중심 논의 테이블에 놓이게 되었다. 기본소득이 바야흐로 여야를 가로지르는 공통의 최대 정치적 아젠다로 성장했다.⁴⁾ 세계적으로 관심은 높지만 몇 개의 지역적인 정책실험만 이루어지고 관망중인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를 한국의 중앙 정치의 중심에 놓고 공론의 장을 펼치는 데에는 한국의 역동적이고 반응적인 정책생성 문화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사회정책학계에서도 기본소득이나, 사회보장제도(특히 사회보험) 강화나 정책수단 간에 논쟁이 커지고 있다.⁵⁾ 기본소득 지지 입장에서는 공유부(common wealth)의 정당한 배분에 대한

1) Kingdon(1984)이 주창한 '정책의 창(policy window)' 이론은 정책추창자들의 관심대상인 정책문제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들이 선호하는 대안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열려지는 기회를 의미한다. 정책의 창은 '문제의 흐름'(problem stream),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 그리고 '정책의 흐름'(policy stream)이라는 3가지 흐름의 변화에 의해 열리게 되며, 이러한 3가지 흐름이 하나로 합쳐지면 정책의 창이 열린다.

2) COVID 19에 위기는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 청년과 노년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타격이 가해졌다. 재난 위기는 젠더 간에도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쳐, 여성 저임금근로자의 취업감소 및 일시휴직 증가 폭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권혜자, 2020).

3)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 확대를 약속하며 예술인근로자부터 시작하여 특수고용형태근로자, 자영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고용사회안전망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지연, 홍민기(2020)는 덴마크와 같이 소득기반으로 전국민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소득기반 국민사회보장의 제안은 2018년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기조강연 김용하(2018) "새로운 정책은 기존 토대에서 가능한가"에서도 제안된 바 있다.

4) 경기도에서 만 24세 진입 모든 청년에게 연 100만원(분기 25만원)을 지급하는 일명 청년기본소득을 시작으로 여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정책브랜드였던 기본소득 논의가 지난 6월초 야당 미래통합당 김종인 대표가 물질적 자유의 보장, 누구든 빵 사먹을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진정한 자유로운 사회를 위해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천명하면서 여야를 가로지르는 정치적 아젠다로 부상했다. 심지어 미래통합당은 8월 13일 발표한 10대 정당 정강정책 중 제1조로 국민 기본소득을 내걸었다.

기본권이라는 정통적 입장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조응하는 대안적 분배 체계, 불안정노동자의 협상력 제고와 안정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시민역량 및 시민사회 지원, 유효수요 창출로 경제활성화 및 경제순환 기여, 사회보장 사각지대 문제 해결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재분배 규모의 확대 및 누진적 비용부담으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지나치게 복잡하고 낡은 사회보장체계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김교성 등, 2018; 백승호, 이승윤, 2019; 강남훈, 2019; 최영준·윤성열, 2019; 이원재 등, 2019; 서상목, 2020; 금민, 2020; 백승호, 2020; 유종성, 2018, 2020). 반면 사회보장 강화 지지 입장에서는 기존 사회보험 중심 사회보장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경제사회변화 속도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 기본소득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과 함께 예산제약(초고령화 등)으로 막대한 재정투입 및 지속의 불가능성 문제, 재정투입 규모 대비 개인별 보장가능 수준이 취약한 정책의 낮은 가성비 문제, 위험집단 표적정책 대비 불평등 완화 정책효과의 제약,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경합 관계 및 구축 효과, 더 나아가 기본소득이 복잡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낡고 단순한 구상이며 정보기술혁신으로 더 정교하게 사각지대 문제 등 사회안전망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에 비판적이다.⑥(OECD, 2017; 최한수, 2019; 김용하, 2020; 양재진, 2018, 2020; 오건호, 2020; 이상이, 2020; 홍경준, 2020).

〈표 1〉 기본소득 찬성 및 반대 논거

기본소득 찬성	기본소득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부(common wealth)의 정당한 배분에 대한 기본권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조응하는 대안적 분배체계 ▪ 불안정노동자의 협상력 제고와 안정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시민역량 및 시민사회 지원 ▪ 유효수요 창출로 경제활성화 및 경제순환 기여 ▪ 사회보장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로 사회안전망 강화 ▪ 사회적 재분배 규모 확대 및 누진적 비용부담으로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에 기여 ▪ 지나치게 복잡하고 낡은 사회보장체계의 혁신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사회변화 속도에 비해 기본소득 도입은 시기상조 ▪ 예산제약(초고령화 등)으로 막대한 재정투입 및 지속의 불가능성 문제 ▪ 재정투입 규모 대비 개인별 보장성 수준이 취약한 정책의 낮은 가성비 문제 ▪ 위험집단 표적정책 대비 불평등 완화 정책효과의 제약 ▪ 기존 사회보장제도와의 경합 관계 및 구축 효과 문제 ▪ 기본소득 구상이 복잡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낡고 단순한 구상 ▪ 정보기술혁신으로 더 정교하게 사각지대 문제 등 사회안전망 과제 해결 가능

5) 사회정책연구회 회원들의 열정적 논의에 특별히 감사드린다.

6) 이외에도 기본소득의 비판적 논거들로는 기본소득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공유부 창출의 중요한 부분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인지기본 생산체제를 고려하면 개별 국가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설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비판적이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플랫폼경제의 다기적이고 다양한 측면을 반영한 보장체계로서는 너무 거칠고 단순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비판적이기도 하다.

각 정책수단을 옹호하고 반대하는 데는 각각 모두 타당한 이유들이 충분하다. 따라서 어떤 정책수단이 더 옳은가, 더 타당하냐의 논쟁은 각각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타당한 논거의 충분성 때문에 자칫 평행선을 달리는 소모적 논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군다나 기본소득 또는 기존 사회보장 강화로 정책대안을 이분(二分)하여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만, 사실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대로,⁷⁾ 기존 사회보장 강화는 그것대로 그 내에 상당히 이질적인 정책이념과 상이한 정책영향을 미치게 될 다양한 정책스펙트럼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효과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동일한 명명이라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포함하는 정책수단의 찬반 논의에 매몰되기보다는 이러한 논의가 촉발된 근본문제, 근본 질문으로 회귀하여 논의를 풀어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우리를 둘러싼 상황적 조건을 확인하고, 각 주장의 핵심적이고 타당한 문제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어령 교수(2011)는 모기장 발명의 예를 들며 ‘더우니 창문을 열자’는 주장과 ‘모기가 들어오니 창문을 닫자’는 대립하는 각각의 주장이 갖는 타당한 논리를 모두 수용하는 접점을 궁리하고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모기장이라는 창의적 산물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통찰한 바 있다. 지금의 정책 공론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기본소득 도입과 기존 사회보장 강화라는 대립되는 주장도 각각의 주장이 포함하고 있는 핵심적이고 타당한 문제의식을 수용하고 그 둘 간의 접점을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현실에 최적화된 창의적인 제3의 정책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⁸⁾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기본소득 주창자들이 가지는 타당한 문제

7) 동일하게 기본소득으로 호명되고 기본소득의 심플한 제도구성 및 운영 요건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주창자들 간에도 기본소득 도입 근거에 대한 철학적 입장과 강조점은 상이하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의 구성과 핵심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인식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기본소득을 사회적 공유부에 대한 기본권에 입각한 배분임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고(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2020; 강남훈, 2019; 금민, 2020; 백승호, 2020), 기본소득을 4차산업혁명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안적 분배체계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고(김교성 등, 2018; 백승호, 이승윤, 2018; 이원재 등, 2019), 기본소득을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또는 불평등 완화의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삼는 입장도 있고(유중성, 2020; 백승호, 2020), 기본소득이 유효수요 창출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정책이라는 입장(강남훈, 2019; 유중성, 2020)을 강조하기도 하며, 기본소득은 너무 복잡해지고 보장성 기능은 충분하지 못한 현행 사회보장 체계와 관료주의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사회혁신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기도 하며(서상목, 2020), 더 나아가 기본소득 도입을 목적으로 증세 수용성을 높여서 사회전체의 재분배 자원의 크기를 키울 수 있다는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입장(강남훈, 2019; 유중성, 2020)을 밝히기도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 특정인구집단에 대한 기본소득 실시를 주장하며, 기본소득 수준의 충분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기본소득네트워크, 2020). 이러한 주장들이 서로 배타적인 논의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목적과 수단, 근원적 권리와 기능적 필요 간에 강조점을 달리한다. 또한 기본소득 관련 증세에 대한 구상과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체계와의 관계 정비에 관한 입장에서 상이점은 더욱 명확해진다.

8) 타당하고 일리 있는 두 가지 주장이 부딪힐 때, 두 가지 주장을 모두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1) 기존의 사회보험 확대로는 사회안전망으로서 한계가 명확하다. 2) 기본소득은 재정투입 규모 대비 개인별 보장수준이 낮고 예산제약으로 재정부담을 지속하기 어렵다.

의식인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문제해결에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는 기존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하면서도 기존 사회보장체계 강화 주창자들이 갖고 있는 현 단계 기본소득의 정책효과성, 비용효율성 제약과 예산제약성 등의 타당한 문제의식을 수용하는 접점을 찾아보고자 했다. 더 나아가 삶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실질적 위험뿐만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삶을 지원하면서도,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이고 혁신적인 삶의 주체성을 발휘하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배려하는 적극적인 도덕적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책방향을 지향하는 대안으로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제]의 도입 검토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근로생애 기간 중 개인이 선택하는 일정기간 동안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연구자가 이미 제안한 바 있는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 구상(석재은, 2018a)의 연장선이다. 이 구상을 지지하는 철학적, 이론적, 현실적 논리와 근거를 새롭게 정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왜 기본소득인가?

1) 구조적 변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의 불안정성 확대를 넘어⁹⁾

체감하는 온도차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현대 산업사회의 생산물에 대한 자원분배의 주요한 제도적 방식인 ‘임노동계약’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할당해 주지 못하고, 적당한 보수와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 사회질서 유지의 축으로서 노동계약과 완전고용 패러다임의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 로봇, 스마트팩토리 등 지능화 생산체제가 일자리를 잠식할 위험은 비교적 확실한 반면, 이를 대체할 만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지능정보기술 혁명, 소위 4차 산업혁명은 산업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일의 내용과 일자리 양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변화시킨다.

지능정보기술 혁명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경제(platform economy)의 등장으로 고용-피고용 관계가 불명확한 비전형근로자(파견, 용역, 특수형태 근로자 등), 독립계약 프리랜서 등 Gig 노동자(클라우드 노동자, 주문형 앱 노동자)라 불리는 불안정노동(precariat) 형태가 증가하고 있

9) 필자가 작성한 4차산업혁명위원회(2019)의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의 일부내용을 활용하여 재작성하였음.

다(스탠딩(김태호 역), 2014; 백승호, 이승윤, 2018; 이원재 등, 2019). 또한 생애주기상 불안정 노동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 상당기간 불안정노동을 지속하거나 비자발적 퇴직 후 불안정노동 상태를 지속한다.

더욱이 지능정보기술 혁명에 따른 일자리 양상의 변화가 개인의 다양한 선택과 결합되며 노동형태가 더욱 다양화, 복잡화되고, 노동생애가 다기화된다. 1인 1직업이 아니라 1인 N직업자가 많아지고, 다양한 노동생애 주기와 노동구성을 가지며 표준적 노동생애 모델로부터 이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소득창출 형태도 다양해진다. 정통적 임노동자 형태가 아닌 독립계약 노동자가 많아지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노동형태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AI 기반 자동화기술의 발전과 확산으로 고용을 수반하지 않는 성장이 가속화되며 자동화된 불평등(Automating Inequality)으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초연결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의 지능적 활용을 통해 모든 산업영역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키워나가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디지털 자본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데이터 생성 등 인지가본 축적에 대한 기여와 보상 간 연계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한편, 인지가본을 통해 만들어낸 성과들도 모두 장벽 없이 공유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기존에 안과 밖의 경계가 명확한 가운데 계약에 기반하여 관계가 맺어지고 성과가 배분되던 것으로부터 점점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개방체계가 됨에 따라 기여와 보상 간 관계도 좀 더 느슨하게 재구성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4차산업혁명위원회, 2019).

이와 같이 노동 경계의 불명확화, 노동형태의 다기화 및 복잡화되는 한편, 노동이 배제된 성장, 불안정노동 증가로 고용의 불안정성(precariousness)이 증가하여 안정적 고용에 기반한 안정적 노동소득 중심의 생활보장체제에 균열이 발생하고, 삶의 불안정성(insecurity)과 불확실성(uncertainty) 및 비예측성(unpredictability)이 커져간다(Offe, 1997; Standing, 2002; 스탠딩, 2014). 따라서 새로운 생산체제에 조응하는 자원배분을 위한 대안적인 새로운 분배방식이 필요하다. Offe(1997)는 새로운 분배방식 대안으로 시민권에 기반한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기본소득이 완전고용과 결부되지 않은 경제적 시민권(economic citizenship) 확립을 실현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2) 주체의 변화: 위험의 개인화¹⁰⁾와 높은 불안수준을 넘어 제 2의 개인화

무엇보다 기본소득을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근간은 ‘위험의 개인화(個人化)’에 따른 각자도생(各自圖生) 사회로의 급진전으로 우리 사회구성원의 불안수준과 불행수준이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이기 때문이다(석재은, 2017, 2018c). 개인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사회보장이 작동하지 않을 때 위험의 완충망이 되어 주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조차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저소득계층일수록 사회적 안전망은 물론 사적 안전망도 취약하다. 가이 스탠딩이 프레카리아트(precariat)¹¹⁾라고 명명한 불안정노동 집단의 성장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한다(스탠딩, 2014; 2018).

프로이트는 『문명화와 불만(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에서 근대 서구사회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자유(freedom)와 안전보장(security)’이라는 동등한 두 가치의 타협, 상호교환관계임을 통찰했다. 문명화가 인간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자연 및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는 불안정으로부터의 자유였지만, 그 대신 자유에 대한 통제와 제한을 댓가로 요구받았다. 문명을 자유와 안전보장 사이의 교환관계로 보면, 보다 많은 자유란 불가피하게 불안정의 확대를 의미할 수밖에 없으며, 보다 넓은 안전보장은 필연적으로 자유의 훼손을 의미한다(바우만, 2014).

인간의 역사는 해방을 위한 자유 추구의 역사이다. 이러한 점에서 누구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개인화’는 자유를 위한 진보이며 해방이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화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던 공동체 보호안전망의 해체를 의미한다(백, 2014; 홍찬숙, 2016).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일찍이 ‘위험의 개인화’에 대한 통찰을 보여줬다. 벡은 산업사회의 생산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위험생산의 감수는 산업사회를 위험사회(risk society)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산업사회 제도들이 개인화된 형태로 해체되며 사회적으로 끊임 없이 발생하는 위험과 모순에 대한 해결은 개인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위험의 개인화의 진전에 따라 분배나 평등이 더 이상 집단들 간의 불평등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개인의 생애 속에 파편화, 유동화하고 있다(홍찬숙, 2016). 이러한 불평등 구조의 유동화에 대

10) 개인화는 “근대사회에서 개인과 사회를 매개한 제도화된 집합적 유대의 형태들이 해체되는 현상”이다. 개인화는 인신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과 동시에 공동체적 보호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이중적(ambivalent) 과정이다. 개인화의 이러한 양면성은 개인화가 행위자 정체성의 개인화일 뿐 아니라 생애위험의 개인화임을 의미한다(홍찬숙, 2016). 울리히 벡은 “산업사회의 필멸설에 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적 규범들이 쇠퇴함에 따라 생겨난 것은 사랑과 도움을 갈구한 험벗고 두려움에 질린 공격적 자아이다”(지그문트 바우만, 2005).

11) 프레카리아트(precariat)는 불안정하고 불안정한 노동, 직무 정체성의 결여, 실질 임금의 감소와 불안정화, 수당의 상실과 만성적인 채무 등에 직면한 사람들을 일컫는다(스탠딩, 2014; 2018: 13).

한 백의 진단은 지그문트 바우만(Zigmunt Bauman)의 액체근대(Liquid Modernity) 논의로 연결되었다(홍찬숙, 2016). 고체근대(solid modernity)의 시기에는 완전히 합리적이면서 이성적으로 완벽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¹²⁾ 액체근대로의 전환은 자신의 형체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없는 액체와 같이 '변화 그 자체'를 삶의 영구적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액체근대 시대에는 구조적 불확실성과 지속적인 위험, 위태로운 불안이 상수(常數)가 된다(바우만, 2005).

개인화의 진전은 가부장적인 복지국가의 틀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개인을 양산한다. 복지국가는 산업사회의 불가피한 사회적 위험을 미리 예상하고 사후 보장체제를 마련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안전한 확실성으로 만드는 것이 복지사회의 핵심가치였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것이 가능하지 않음을 체험하고 있다. 복지국가와 산업사회의 합리성에 대한 낡은 믿음이 '불안'의 원천이 되고 있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일반 시민들의 무차별적 불안(anxiety)으로 변화하고 있다(백, 2014; 홍찬숙, 2016).

개인화는 위험을 동반함에도 불구하고 자유 추구를 향한 해방의 진전이고 불가역적인 역사적 진보이다. 그렇다면 개인화로 인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상수가 된 유동화된 사회에서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바우만은 개인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변화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행동양식과 삶의 기술을 습득하고 발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바우만, 2005). 백은 '제2의 개인화'가 산업사회와 위험사회 간 단절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를 매개로 근대성 원리인 개인화의 '연속성'에 주목해야만 무질서해보이는 현재의 변화를 진정한 해방의 방향으로 견인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백은 불연속노동을 새로운 정상노동 형태로 진단하고, 개인의 생애속에 '시간의 새로운 배분'을 통해 취업노동과 비취업노동을 결합할 수 있는 형태로 불연속노동을 이해한다. 유동화는 현대사회에 불연속노동에 대한 권리가 중요해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최소한의 기본소득 및 사회보장을 통해 불연속적 노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안전한 제2의 개인화가 가능하다고 본다(홍찬숙, 2015). 홍찬숙(2017)은 "압축적 근대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한국의 경우에는 개인화 자체가 시작단계이므로 개인화와 제2의 개인화가 함께 진행되는 압축적 개인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12) 고체근대에는 완벽한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 지식, 기술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제러미 벤담이 고안한 판 옵티곤 모델이 전형적이다. 죄수들이 규율과 감시를 끊임없이 내면화하여 스스로 감시하게 만드는 것이 고체근대를 지배하는 사회운영의 핵심원칙이었다.

3) 정책의 넛지(nudge)¹³⁾ 역할: 기존 사회안전망 체계의 한계와 느슨해지는 제도 및 비도덕적 시민으로의 유인을 넘어 적극적인 도덕적 시민

산업사회 사회안전망의 중심은 노동소득을 근간으로 노동소득의 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보험으로 구성되었다. 질적으로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서 표준적인 임노동 중심으로 사회적 위험 대응체계를 설계한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체제는 심각한 한계를 보이며 변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사회보험체제는 산업의 지각변동에 따른 다양한 노동형태의 출현과 노동생애 다기화라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광범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드러내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위한 고용형태의 의도적 복잡화에 따라 원-하청, 파견 노동 등 사용자 책임 주체에 대한 다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수고용직종사자의 등의 근로자성 인정을 둘러싸고 다름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플랫폼노동 등 노-사 관계가 불명확하고 실업 구분이 불명확한 Gig 노동자 증가, 디지털 기반 1인 자영업 증가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더욱 광범해지고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석재은, 2018c).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보험제도도 자기 혁신을 거듭해왔다. 특히 고용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의 기본 원칙까지 변화시키며 자영업자에 대한 적용확대, 근로자성에 대한 포괄적 해석을 통해 주요 특수고용직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원청 사용자에 대한 책임 강화, 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가능 등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용 및 수급 요건을 완화해왔다. 자기부담이라는 사회보험 원칙을 완화하여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부담을 조세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도 거듭 확대해 왔다. 이러한 사회보험 정체성을 허무는 변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효과의 실효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느슨해진 사회보장 적용요건 및 수급조건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남용, 오용하는 도덕적해이 가능성도 커졌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대해진 제도 적용과 느슨해진 제도 운영 가운데 이를 활용, 남용하는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¹⁴⁾ 불안

13) 넛지(nudge)는 원래 ‘(특히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라는 뜻의 영단어로 미국 시카고대의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Richard H. Thaler)와 법률가 캐스 선스타인(Cass R. Sunstein)이 공저한 《넛지(Nudge)》란 책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세일러와 선스타인은 책에서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란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 금지와 명령이 아닌 팔꿈치로 옆구리를 톡 치는 듯한 부드러운 권유로 타인의 바른 선택을 돕는 것이 넛지인 것이다. 넛지는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지만 유연하고 비강제적으로 접근하여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libertarian paternalism)에 바탕하고 있다. 어떤 선택을 금지하거나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한경 경제용어사전).

14)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과거 3년간 구직급여 3회이상 반복수급자가 2017년 2만명을 넘어서고,

정노동이 상수가 되면서 사회보장급여를 불연속 노동기간의 소득으로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노동생애 모델을 하나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개인화와 결합하여 개인의 생활양식의 변화를 통한 사회적 적응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⁵⁾ 예컨대, 반복적 실업과 실업급여의 반복적 수급이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불안정노동에 놓인 청년세대 또는 중고령 서비스노동자의 경우 고용과 실업의 반복을 정상적인 노동공급 모델로 삼으면서 실업급여를 활용 또는 남용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산재 근로자의 요양상태 연장 및 산재급여 장기화와 직장복귀 지연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장체계의 느슨해진 구멍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개인들이 점차 많아지는 것이다. 이는 개개인의 비도덕성을 탓하기 보다는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통제할 역량이 없는 현행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¹⁶⁾

이와 같이 전통적 산업자본주의 사회에 조응한 노동중심 사회보험형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에 직면하여 산업사회에 조응하는 복지체제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개인을 도덕적 시민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에 대한 비판적 성찰도 필요하다(보울스,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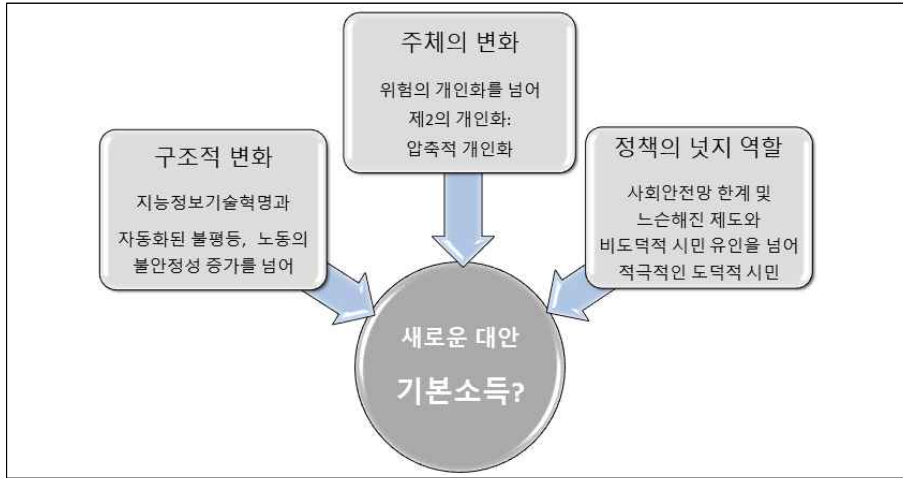
그러므로 새로운 대안적 복지체제의 구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대안으로 Offe(1997), 판 파레이스(1999; 2017)는 시민권에 기반한 무조건적인 보편적 기본소득(Basic Income)을 제안한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정부가 모든 시민에게 노동, 기여, 필요 등과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일정액의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소득을 처음 주창한 필레페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 조현진 역, 2016)는 그의 저작 [Real Freedom for All]에서 “모든 시민(성인)에게 미약하나마 무조건적 소득을 지급하라. 그리고 시민들이 여기에 다른 소득을 더하여 총소득을 늘리게 하라”고 제안한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은 정부가 평생 아무런 조건 없이 성인(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며, 자산을 따지지 않고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낙인이 없고, 실업함정(unemployment trap)도 제거할 수 있으므로 노동유인 저해는 없다. 의무로부터 실질적 자유를 선물 받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2018년 2만 7,649명에 이르고, 2020년 7월 현재 이미 2만5천명을 넘어섰다(중앙일보, 2020.8.2.)

15) 개인들은 구조적 불평등 효과를 상쇄할 집단적 유대감을 상실할 뿐 아니라 개인적 생활양식 변화(독신, 출산율 저하 등)를 통해 위험에 대응하려는 새로운 문화를 발생시킨다(홍찬숙, 2016). 불연속 노동기간과 사회보장급여를 결합하는 노동생애 모델은 백이 권고한 제2의 개인화이기도 하고, 구조변화에 개인의 생활양식 변화를 결합한 적응방식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16) 사무엘 보울스(2020)는 도덕적 좋은 시민으로 견인하는 좋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선호와 경제적 이해를 자극하는 인센티브를 잘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이 둘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그림 1] 기본소득 도입 검토의 배경



3. 한국 사회의 여건과 정책설계의 제약조건

현실적으로 새로운 대안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수용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을 둘러싼 가장 큰 장벽은 막대한 재정소요와 예산제약이다. 민간정책연구소인 LAB2050은 2019년 전국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월30만원의 기본소득을 2021년부터 도입할 수 있는 재정적 실현가능 방안을 포함한 연구보고서(이원재 등, 2019)를 제안하여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그 보고서에서 계산한 30만원 전국민 기본소득 보장에 필요한 재정규모는 2021년 기준 187조원, GDP의 8.5% 수준이다.¹⁷⁾ 한국 기본소득네트워크도 전국민 30만원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181.5조원이다(강남훈, 2019).¹⁸⁾

기본소득 도입의 지지 입장에서 2018년 한국의 GDP대비 공공사회지출은 11.1%로 OECD 평균 20%보다는 8.9%p 격차를 보이는 등 아직 낮은 편이니 기본소득 등 새로운 제도를 추가할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한다(강남훈, 2019; 백승호, 2020; 유종성, 2020).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에 기반하여 중앙은행이 화폐량 발행을

17) 이원재 등(2019)은 동보고서에서 187조원 재원조달 실현방안으로 누진세제 71.3조원, 탈루 등 공정과세 11.6조원, 기존 복지정책 대체 및 소득공제제도 대체 50.2조원, 재정구조조정 29조원, 유휴 및 신규재원활용 25조원을 제시하였다.

18) 필요재정 규모는 181.5조원이며, 증세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27.1조원 증세, 배당 또는 이자소득 종합과세 15조원 증세, 증권양도소득 종합과세 30조원 증세, 토지세(공시지가의 1% 징수) 39조원, 생태세 40조원, 지하경제 과세 20조원, 기존 사회복지 지출 전환금 13.1조원 등이다.

늘리면 재정조달에 문제가 없고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전용복, 2019). 그러나 기본소득 도입 반대론을 펴는 입장에서는 한국의 2020년 연간 정부 공공사회지출이 200조원 남짓인데, 만약 기존 체계에 그대로 기본소득을 얹는다면 정부 공공사회지출의 100% 순증가가 필요하고, 향후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자연증가분의 급증추세를 고려하면 재정부담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평가한다.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수준이 낮아 보이는 것은 한국의 현재 고령화 수준이 OECD 평균보다 낮고 아직 고령자의 연금수급율이 낮아 지출규모가 작아 보이는 한시적인 착시효과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불과 수년내에 급속한 초고령사회로의 전환과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공공사회지출이 급속한 속도로 가파르게 증가하여 사실상 재정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용하, 2020; 양재진, 2020; 이상이, 2020). 양 주장 모두 일리가 있는 평가이다.

좀 더 객관적인 재정여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제적 역량과 재정적 역량, 그리고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석재은, 2018c). 경제적 역량 측면에서 한국 경제는 수출의존 개방경제체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어 세계경제 변동에 취약하며, 한국의 주축 산업인 조선업, 철강업, 자동차산업의 위기로 경제 펀더멘탈에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정체되는 저성장시대에 접어들었다. 중국, 인도가 6-7%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데 비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이후 급감하여 2-3%대 수준이며, 2019년에는 2%였다(통계청, 2020). 1인당 국민소득도 3만불 문턱에서 수년째 정체하다 겨우 넘어섰다. 총일자리수는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일자리수는 감소하였다. 청년실업률이 높으며(10% 내외, 43만명 내외), 자영업자 비율이 27.4%로 EU 16%, 일본 10%, 미국 6%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공장의 생산기술 자동화 수준은 세계 최고수준이지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수용성과 준비수준은 낮은 편이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정체는 코로나 전후를 가르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문법을 만들어 낼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적 역량 측면에서 국민부담률은 2019년 기준 27.4%로 OECD 회원국 평균 34.4% 비해 재정부담 여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초고령화로 재정부담 여력은 급속히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의존 개방경제체제 특성으로 인해 세계경제체제에서 한국 정부의 재량적인 재정역량은 제한적이다. 남북 대치로 높은 국방비 지출 부담을 안고 있는 한국의 특수성도 사회지출 역량을 제한한다. 더욱이 낮은 정부신뢰로 인한 국민의 작은 정부에 대한 선호, 주택 등 부동산 투자 중심의 지출성향 등으로 인해 국민의 담세 역량은 취약한 편이다.

정치적 역량 측면에서 한국 사회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OECD 회원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2019년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22위이다. 2017년 32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낮은 순위이다. 낮은 정부신뢰로 인하여 사회통합 정치 및 정부의 재정적인 정책역량이 낮고, 지방정부의 자율적 정치 및 정책 역량도 취약하다.

사회적 역량 측면에서도 시민사회가 미성숙하여 공동체 연대의식이 미약하다. 공동체 연대의식이 낮다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 주인의식이 낮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이 취약하여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사회 분위기로 의존(依存)에 대한 부정적 관점이 강한 편이다. 또한 개인에게 가족형성에 따른 부담을 지나치게 주는 데 대한 ‘가족주의의 역습(逆襲)’, 가족책임의 역작용(逆作用)으로 초저출산이 지속되어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Esping-Andersen, 1999; 석재은, 2019c).

복지 수요의 측면에서 2025년 초고령사회에 접어드는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적 부양부담이 급증할 것이다. 공적연금 지출의 증가는 물론이고, 전체인구 1인당 평균의료비의 4배 정도 지출하는 노인의료비의 급증, 장기요양지출의 급증이 예고되고 있다.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높고, 불평등 및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개인화가 광범하게 진전되어 가족 안전망의 완충효과가 해체되고 있어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체계의 작동이 필요하다. 광범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로 임노동 기반 사회보험 중심 사회안전망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상의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사회적 현실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이라는 막대한 재정소요를 동반하는 제도의 도입에 신중함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세계경제체제속의 한국 경제의 위치로 인한 한국 경제의 자율성 제약, 그리고 2065년 42.5%라는 세계 최고 고령화율이 고정된 변수라는 점에서 가용예산의 제약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변수이다.

더욱이 한국 사회가 정부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 연대의식, 사회적 책임의식이 아직 낮은 수준이라는 점은 거대한 사회정책을 설계하는 데 상당한 장애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뮤얼 보울스(2020)가 지적하듯이 좋은 시민을 만드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역동적이고 교육수준이 높은 한국 사회의 특성상 좋은 정책 설계를 위해 사회적 공론화와 실질적 소통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시민의식은 급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¹⁹⁾

19) 이번 COVID 19에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원활한 소통으로 협조를 구하는 정부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K-방역이라 칭될만한 성공적 대응을 이끈 주요 요인이라 보이기 때문이다.

4. 해결해야 할 문제와 대안적 정책설계의 맥락적 요소

1) 사회보장에서 배제된 불안정노동 집단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기본소득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설계의 맥락적 요소는 무엇인가? 첫째, 위기에 취약하고 위기로부터 가장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작 제대로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배제되어 있는 문제이다. 즉, COVID 19에 위기는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불안정 고용 청년과 노년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 집중적인 타격이 가해졌다. 생존에 필수적이 아닌 서비스 영역(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등)의 취약한 근로자들은 강제 무급휴직 또는 해고를 당했고, 생존에 필수적 노동을 제공하는 보건의료노동자, 돌봄노동자, 택배노동자는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보호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특별한 추가보상 없이 더 커다란 격무에 시달려야 했다(권혜자, 2020). 더욱이 이번 위기에 가장 치명상을 입은 서비스업 취업자,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자영업자, 예술인 근로자,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해 고용보험제도의 무용성은 가장 취약한 근로집단을 위기로부터 보호하는데 무력한 현행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위기 시에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위험의 불평등한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고용의 안정성 보장이 근본적 대책이라 할 수 있지만, 고용의 불안정성은 기술변화와 산업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백과 바우만이 제안했듯이 고용의 불안정성, 불연속적 고용을 상수로 보고, 고용의 불안정성, 불연속적 고용환경에서도 삶의 기본적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의 혁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첫 번째로, 4차산업혁명 등 새로운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는 주요한 표적집단은 근로연령집단이며, 따라서 소득보장의 표적집단을 근로연령집단을 중심으로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동, 노인 등 다른 연령집단을 모두 포괄하는 대응책도 물론 가능하지만, 가장 핵심 우선집단은 새로운 구조적 위험으로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아진 근로연령집단이다. 아동, 노인은 복지국가의 전통적 표적집단이며, 한국에서도 비록 연령범위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월10만원 수준의 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이미 도입되었으며, 노인을 위한 월30만원 수준의 준보편적인 기초연금이 실시되고 있다. 이제는 노동시장 환경변화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근로연령집단을 대상으로 한 시민권 기반 수당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두 번째로, 새로운 구조적 위험에 대응하는 전략의 선택과 관련하여 명확한 고용관계, 근로자성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 강화 전략의 한계는 비교적 뚜렷하다. 가능한 전략은 첫째, 모호

한 고용관계, 모호한 근로자성, 더 나아가 비고용관계, 비근로자를 포괄하는 변형된 사회보험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이 있다. 소득기반 고용보험 강화 방안도 이러한 방안의 하나일 수 있다.²⁰⁾ 그러나 이 방안은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 취업자만을 포괄하는 것이다. 또한 실업위험이 발생했을 때 위험에 대응하여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고용 여부, 근로자 여부, 실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대표적 예이다. 근로연령집단 모두를 포괄하는 보편성(universality)과 무조건성(unconditionality)이 중요하다. 기본소득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전체 근로연령집단을 포괄하는 방안이 있고, 다른 변형으로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고 취업자집단만을 대상으로 포괄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두 제도는 목표가 상이하다. 전체 근로연령집단을 포괄하는 것은 시민권적 수당, 보편적 기본소득의 의미가 강하다면, 취업자만을 포괄하는 것은 불연속노동에 대한 소득보전이라는 의미가 강하며, 소득기반 사회보험과 같이 위험에 대응한 성격이 강하다. 전자가 청장년(근로연령층) 기본소득이라면, 후자는 근로저축계좌의 형태가 될 것이다.²¹⁾

세 번째로, 보장의 수준과 관련하여,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하여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급여의 충분성(sufficiency)이 중요하다. 실업위험 대응에 초점을 둔 고용보험제도나 근로저축계좌는 비교적 충분한 급여보장을 계획한다. 기본소득 주창자들 가운데 급여수준의 충분성에 대한 강조를 덜 하는 경우들이 많다. 특히 사회적 공유부에 대한 기본권으로 접근하는 경우, 사회보장의 성격이 아니라 공유부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므로 지분의 크

20) 덴마크 방식의 시사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덴마크는 18-63세 소득활동자가 가입가능한 모든 취업자에 대한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하며, 재원은 모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노동시장분담금을 8% 부과하여 조성한 조세(이것으로 실업 뿐만 아니라 주요 사회보장항목(질병, 모성, 실업) 지출비용에 대해 통합적인 성격의 재원으로 활용)로 70%를 조달하고, 정액 보험료 30%로 조달한다. 실업보험 가입여부는 개인의 선택인데, 소득비례 '노동시장분담금(labour market contribution)'을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약간의 정액보험료만 내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가입율이 77%로 높은 편이다. 수급자격은 구직자로 등록된 자 중에서 1년 이상 실업보험 가입이력이 있고, A-소득(근로소득)과 B-소득(사업소득)의 합이 지난 3년 동안 238,512 DKK 이상이라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수급가능기간은 2년이고,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전년 소득대비 최대 90% 수준이며, 상한액은 비교적 낮게 설정하고 있다. 실업급여 상한은 2020년 풀타임 기준으로 월 19,083크로네(원화 337만원) 수준이다(장지연, 홍민기, 2020).

21) 청장년(근로연령층) 기본소득은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으로 구체화하여 제안하였다. 근로저축계좌는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제의 실업보장 버전으로 필자가 설계한 것이다. 정액급여이며, 실업시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가용자원을 예고할당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 성격보다는 실업보험 및 실업부조를 대체하는 사회적 효용성에 중점을 둔 보장체계에 근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동이력 없는 청년층을 위해 12개월 수급권을 선지급 가능하도록 하며, 이후에는 노동이력 1년이 쌓일때마다 1개월의 수급권리가 쌓이는 방식으로, 합하여 최대 48개월의 수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근로생애 40년에 10%에 해당하는 4년의 휴지기를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청년수당, 실업보험(고용보험 구직급여), 실업부조를 대체하는 성격의 보장체계이다. 불안정노동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가 상당부분 가능하며, 4년 동안의 근로휴지기를 담당하는 역할이라 할 수 있으며, 4년 이상의 실직에 대한 보장은 공공부조, 상병수당 등 다른 제도에 의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에 따라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기본권으로 배분받는다라는 배분 정의 실현에 더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이 스탠딩(2018)도 강조하였듯이 기본소득은 충분히 적절한 수준이어야 한다. 다만, 수급자에게 의미가 있을 정도로 충분하되 총체적인 보장을 제공할 만큼 높아서는 안된다. 기본소득이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가 가능할 수 있는 협상력 보장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급여수준은 최소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2) 개인화를 지원하는 개인단위 급여 보장

둘째, 가부장제를 온존하는 가구단위 보장이 아니라 개인단위 보장이 되어야 한다.²²⁾ 개인별 급여보장은 청년세대를 필두로 이미 사회의 주류적 변화가 되고 있는 개인화 방향과 조응한다. 개인별 보장은 자유를 대가로 삶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놓여 있는 개인들에게 안정성을 지원할 수 있다.²³⁾ 또한 개인단위 보장은 보이지 않는 돌봄노동의 주요 담지자로서, 돌봄노동을 불평등하게 담당하면서도 사회적 자원배분에서는 배제되어 온 여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²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생산영역과 재생산(돌봄)영역을 모두 가시적 영역으로 드러내놓고 그 비중의 균형과 책임 분담, 역할 분담, 자원 배분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석재은, 2018b).

이러한 맥락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배제하고 취업자만 표적집단으로 한다는 것은 여전히 생산영역의 노동만을 중심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가려진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등을 고려한다면, 취업자만이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를 포괄하여 전체 근로연령집단이 정책표적 집단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22) 이번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단위로 분배한 것과 관련하여, 행정비용과 편의성을 이해하더라도 젠더 관점의 미흡, 개인화 경향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3) 최영준 등(2019)은 개인의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개인의 실질적 자유의 부재가 근본문제라고 보고 개혁 방향의 원칙으로 자유안정성 원리를 제시하였다(최영준, 윤성열, 2019).

24) 이번 COVID 19 위기를 통해 다시금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 것은 필수적 재화로서의 돌봄의 중요성이다. 돌봄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비가시적 영역에 놓여있는 돌봄은 광범하며, 돌봄의 책임은 여전히 성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 감염위험으로 사회적 돌봄이 중단되자 돌봄의 책임은 다시 사적 책임, 여성의 책임으로 회귀했다. 또한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회적 돌봄 영역의 일선 돌봄을 담당하는 돌봄노동자의 95%가 여성이라는 점, 재가서비스를 하는 돌봄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시간제 호출노동의 불안정노동 상태이며 낮은 임금으로 돌봄노동을 제공한다는 점,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가족 돌봄휴가를 신청한 비율 역시 여성이 69%로 남성(31%)과 2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는 점 등의 사실로부터 공식화된 돌봄 영역에서나 비공식적 돌봄 영역에서도 여전히 돌봄의 책임은 성불평등하게 배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적극적인 도덕적 시민을 견인하는 정책의 넋지 역할과 사회가치의 공유

셋째, 도덕적 시민으로 견인하는 정책으로 설계해야 한다.²⁵⁾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도 있고, 또는 선한 의지를 강화하며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도덕적 시민으로 견인할 수도 있다. 좋은 정책이 좋은 시민을 만든다(배너지와 듀플로, 2012; 보울스, 2020). 소득지원정책을 어떻게 인간의 이기심이 극대화된 공유지의 비극을 만드는 덫으로 작용하지 않고 시민의 덕성을 자극하고 좋은 시민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새뮤얼 보울스(2020)는 사람들의 물질적 이해와 도덕적 감정에 모두 호소함으로써 시민적 행동을 장려하고, 물질적 이해와 도덕적 감정이 서로를 몰아내지 않도록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을 프레이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선호와 경제적 이해를 자극하는 인센티브를 잘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이 둘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보울스, 2020).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하고 시민들이 충분한 이해가 있는 가운데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많은 정책실험에서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이해한 시민들은 '사회적 선호'와 '경제적 이해'가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보울스, 2020).

아비지트 배너지(Abhijit Banerjee)와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가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Poor Economics')』(2012)에서 강조했듯이 정책대상이 수동적인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행위자 요인의 중요성을 상기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⁶⁾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의 심리적 동기 및 행태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게으른 실업자와 급여 의존을 모색하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것인가, 자기주도적 삶의 계획자로 이끌 것인가. 좋은 시민 또는 나쁜 시민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보울스, 2020). 따라서 주체적인 삶의 주인으로서 물질적 자유만이 아닌 정신적 자유를 가진 주체적인 개인의 안정과 자유를 지

25) 새뮤얼 보울스(2020)는 정부가 정책을 어떻게 만들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도 있고, 또는 선한 의지를 강화하며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도덕적 시민으로 견인할 수도 있다. 좋은 정책과 법질서는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이기심을 이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인 동기를 유발, 배양, 강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목표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석재은, 2020)

26) 빈곤퇴치를 위해 거창한 사회구조적 문제에 착목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과 생각, 행동동기 등 가난한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합리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정책의 의도대로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가난한 사람들이 왜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삶의 행태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지속하는가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패의 이면에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맥락속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는 '주체적 개인'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빈곤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는 결과적 목표에만 관심 갖는 것으로는 빈곤퇴치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빈곤상태에 머무르고 빈곤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석재은, 2019b)

지하는 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 소통과 교육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것은 좋은 시민, 도덕적 시민으로 이끄는 정책의 효과와 정책실행의 원활성을 가름 짓는 매우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며 책임이다.

5.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제의 제안

1) 제안의 배경 및 설계 의도

한국 사회의 인구, 경제, 재정,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대안적 기본소득의 조건은 기본소득의 가치와 지향점을 견지하면서도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단계적 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개인화 방향에 조응하고, 적극적이고 도덕적 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지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낙관적이지 않은 재정적 역량에도 불구하고 대안적 분배체제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도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의 ‘이용기회’를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발상을 전환하였다. 개인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필요할 때 기본소득 이용기회(이용권)을 이용하여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되, 기본소득 이용기간을 한정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효용성을 최대화하자는 것이다.

이 정책방안의 설계 의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의 판단을 존중하는 인정의 정치**: 구조 변화와 개인의 선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복잡다기한 개별 상황 및 욕구를 일일이 고려하여 정부가 개인별로 맞춤 보장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마다 상이한 개별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당사자 자신이다. 따라서 개별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프레이저, 2011; 프레이저와 호네프, 2014)에 근거하여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아무런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적 제도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만 표준화된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수급의 사각지대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불연속적 노동을 상수라고 전제할 때, 당사자의 필요를 당사자가 결정하도록 존중해야만 개인의 다양하고 다기화된 상황을 포괄하는 제대로 된 사회적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둘째, **개인단위의 사회적 안전장치**: 가구단위가 아니라 개인을 수급단위로 하는 대안적 보장체계를 설계하고자 하였다. 개인화가 갖는 해방과 위협의 양면적 성격을 이해하고, 가부장체제로부터의 해방은 지지하고 불안정한 위협은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장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가구단위로 욕구가 평가되면서 가구 내 개인의 욕구는 늘 간과되어 왔다. 가

족돌봄 노동을 담당해 온 여성이 그러했고 청년이 그러했다. 가구단위로 개인의 니즈가 함부로 재단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 내에 다양한 개인의 상황과 니즈를 가시적인 정책테이블에 올려 놓고 개개인의 니즈에 귀기울이고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보장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개인의 자유의지와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개인단위 사회적 안전장치가 작동하도록 설계하고자 하였다.

셋째, **급여수준의 충분성**: 기본소득이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해줄 수 없는 급여수준이라면 새로운 대안적 보장체제로서 의미가 크게 훼손된다고 보았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개인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의 지원 또는 재충전 및 직업 전환을 위한 심이나 교육의 선택은 생존수준을 충분히 보장하는 급여수준이 보장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방안은 적어도 생존가능의 관점에서 급여수준의 최소한의 충분성을 유지함으로써 불안정한 개인의 삶에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하였다.

넷째, **적정 재정부담과 사회적 효용성**: 재정부담의 적정성은 단순히 재정부담의 역량이라는 공급자 상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재정투입 대비 정책효과라는 사회적 효용성을 포함한 개념이다. 따라서 재정부담의 절대적 규모도 중요하지만, 재정투입이 어떠한 사회적 효용성을 창출해내는가 라는 점이 적정 재정부담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예컨대, 사회적 효용성이 충분하면 조금 무리해서라도 재정부담을 더 해보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할 수 있지만, 사회적 효용성을 타당화하기 어렵다면 무리한 재정부담을 압박하기는 어렵다.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 단계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데 비해 사회적 체감효용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보다는 개인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하여 보장해주는 것이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재정투입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방안은 근로연령기간 25-64세 40년 동안의 10%에 해당하는 4년간을 최대 급여기간으로 하고, 개인이 선택한 기간에 생존수준의 생활이 가능한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보장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다섯째,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도덕적 시민**: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주도적이 되는가? 고용자원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과 사용 조건들을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스스로에게 최적화된 삶을 조직할 때이다. 이 정책이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목표, 의미와 설계의도를 충분히 잘 알고 있을 때, 개인은 훨씬 더 의미 있게 자신에게 할당된 사회적 자원을 귀중하게 잘 활용할 것이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본소득 이용자원은 본인의 근로생애기간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갖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개인은 사회적 지원범위 내에서 그 자원을 활용하여 개인의 삶을 최적화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 이용기회를 모두 소진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더 필요한 자원으로 양보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아름다운 상황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인 이 정책의 의도와 사회적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덕적 시민으로 견인하기 위한 정부의 넋지 역할이 중요하다(석재은, 2020). 정책투명성, 정책결정의 당사자성 확보가 중요하다. 시민에게 정책의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 소통과 공론화를 통한 정책이해도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대상화된 정책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서, 주인으로서의 책임성과 성찰성을 가질 수 있다. 시민들은 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 책임성과 성찰성을 갖춘 시민이 될 것이다. 공동운명체로서의 관계성을 인식하고, 안전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책임의식 공유, 공동체의 활용가능한 자원규모와 효과적 활용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사회연대성을 제고하고 개인적 삶의 불안이 감소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시민의 자기주도성을 지원하는 취업 준비기 및 직업 전환기 교육과 직업훈련 등 기본소득의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자기주도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과정에 정책을 최대로 활용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2)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제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으로 근로생애 4년 동안 기본소득을 이용할 기회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이용권’을 제안하고자 한다.²⁷⁾ 개인에게 근로연령기 생애 4년 기간의 기본소득 이용기회를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각 개인은 생애주기상 기본소득이 가장 긴요한 때, 효용이 극대화되는 시점에 기본소득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이 방안은 4차 산업혁명 등 임노동기반 자원분배 방식에 균열이 커지는 것에 따라 [생애선택 기본소득이용권]의 이용기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기본소득 역할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²⁸⁾

핵심 초점은 근로연령계층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회적 배분은 4년

27) 기본소득은 사회보장 형태로 보면 보편적 시민수당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굳이 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수당이라는 사회보장 형태만으로 명명했을 때 포함되지 않는 다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라고 명명함으로써 안정적 생활과 실질적 자유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 개별성 등을 요건으로 하는 기본소득의 특성이 온전히 포함될 수 있다. 기본소득을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의미를 평가하고 있지만, 사실 기본소득 개념 자체가 사회보장의 맥락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훨씬 깊고 넓은 정치사회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28) 기본소득은 화폐자원 배분뿐만 아니라 시간자원 배분을 통해 국민 안식년(sabbatical period) 보장 또는 생애 전환기간 보장을 의미한다. 이는 Offe(2000)가 안식계좌(sabbatical accounts)를 제안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며, 프랑스, 독일에서 시행되었던 개인의 불연속적 노동경력을 포괄하며 개인별 사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하는 [개인별 경제활동계좌]와 유사한 맥락이다(홍찬숙, 2018).

치 기본소득이다.²⁹⁾ 청년기에는 최대 24개월 기본소득을 보장하며, 중장년기에는 24개월 + 청년기 미사용분을 보장한다. 필요한 전제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이다. 누구나 필요할 때 기본소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각자 인생의 최적 배분대로 기본소득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청장년(근로연령집단)을 위한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이용권]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다음과 같다.³⁰⁾

첫째, 근로연령시민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생애 일정기간 동안 이용가능한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이용권]을 도입한다.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이미 구축된 현행 사회보장제도인 아동수당, 기초연금, 국민연금, 장애인연금 등으로 대응하고, 기본소득은 근로연령시민(청장년)에 초점을 둔다. 둘째, 수급자격은 소득, 기여,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가능한 무조건성을 적용한다. 단, 청년 직업준비기, 중장년 직업전환기, 가족돌봄 및 사회봉사, 학습 등 자기개발 및 재충전 등 비유급노동 시기에 신청토록 제한한다. 셋째,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최소한의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 최저생계수준 급여 이상을 보장한다. 넷째,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한다. 그 기간은 생산체제 및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소위 생애 일정기간 기본소득을 이용할 수 있는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이용권' 개념이다. 현 단계에서는 기본소득의 이용가능한 기간을 생애 총 4년으로 제한한다. 청년기와 장년기로 구분하여 각각 2년씩 설정함으로써 개인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사회적 효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개인의 기본소득 이용 여부와 이용 시기는 개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단, 기본소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포기도 수용한다. 여섯째, 기본소득 보장기간이 제한된 초기단계에는 사회보장급여와 병급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향후 기본소득 보장기간이 길어지게 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대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에 도입이 결정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수당 등은 여기에서 제안하는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청장년 기본소득이용권)]과 대체적 관계에 있다. 일곱째,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재원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모든 소득뿐만 아니라 소비지출에 기본소득 목적세를 부과하는 사회보장세 도입 검토가 필요하며, 인지자본(Cognitive

29) 4년은 48개월은 얼핏 짧아 보이지만, 결코 짧지만은 않은 기간이다. 한국형 실업부조(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기간은 6개월이다. 한국 고용보험은 18-24개월동안 6개월-1년 보험료납입시 6개월-9개월 구직급여 보장이라고 할 때, 48개월이면 구직급여 5-8회 이용가능한 기간이다. 노동생애(25-64세) 40년의 10%이며, 10년에 1년씩 안식년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대체를 최소화(청년수당, 실업부조는 대체) 하며 사회보장과 병행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이다. 또한 향후 정책방향을 가능하고 준비하는 사회적 정책실험 기간으로서 충분한 수준이다. 이와 같이 4년은 여러 가지를 고려한 제안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닐 수 있다. 처음 시작은 2년으로 더 짧게 시작할 수도 있고 향후 여건 변화와 공감대 형성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30) 석재은(2018a)에서 인용

Capital)에 대한 디지털세(구글세), 데이터세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³¹⁾

상기 정책제안에 따른 기본소득 재정규모는 급여수준을 최저생계비 수준인 중위소득 30% 설정시 2020년 기준 약 20조원, GDP의 약 1.0%가 소요되며, 중위소득 50% 설정시 약 33조, GDP의 약 1.7%가 가 소요된다.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이 청년기와 장년기에 걸쳐 최대 4년의 생애선택 기본소득이용권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정하되, 생애주기 청장년기 40년간 중 최대 이용가능 기간은 4년이므로 매년 청장년인구(25-64세)의 평균 10% 인구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재정을 추계하였다.

기본소득 월 52만원 * 12월 * [청장년인구(25-64) * 0.1] = 19조 6,766억원 * 2020년 기준 청장년인구(25-64)=31,533천명 * 기본소득 재정규모: GDP의 약 1.02% 기본소득 월 86.5만원 * 12월 * [청장년인구(25-64) * 0.1] = 32조 7,313억원 * 2020년 기준 청장년인구(25-64)=31,533천명 * 기본소득 재정규모: GDP의 약 1.71%
--

기본소득의 안정적 재원조달을 위해 사회연대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 기본소득 재정수요가 예측 가능하지 않으므로 일반회계로는 기본소득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세, 소위 디지털세 등 인지자본세 등을 통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3-5년 정도의 기본소득 지출 대비 사회연대기금을 약 100조 규모로 우선 조성한 다음, 매년 근로연령기로 진입하는 연령대 청년들의 생애 이용가능한 기본소득 몫에 해당하는 자금을 정부재정에서 사회연대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³²⁾

예상되는 운영상의 문제는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는 제도도입 초기에 기본소득 신청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사전적으로 충분한 시민교육과

31) 이 방안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를 모색하는 청년, 예술가 등 특정직업군, 제2의 노동인생을 준비하는 직업전환기 근로인구, 출산양육기 부 또는 모, 돌봄제공자 가족 등 특정집단, 또는 개인적으로 생애주기의 특정기간에 대한 기본소득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모든 시민에게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이용권]을 누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근로연령층인 청장년을 표적대상으로 하되, 향후에는 연령, 근로에 대한 구분 없이 아동수당, 기초연금과 합하여 기본소득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시민권에 기반한 무조건적 수급자격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넷째, 기본생활이 가능한 최저생존 급여수준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기본소득 이용 여부와 이용 시기는 개인에게 전적으로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효용성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기본소득 보장기간을 실질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최소화하여 정책실행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일곱째, 생산체제 및 노동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생애주기 기본소득 보장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곱째, 현행 사회보장제도에 예외적 원칙을 더하며 균열의 틈을 메우는 접근보다 도덕적해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작으면서도 정책효과는 분명하고 효율적인 방안이다(석재은, 2018a).

32) 석재은(2018a)에서 인용

설명 및 이해가 널리 필요한 이유이다. 정책의 안정적 지속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정책의 설계대로 개인 생애별로 기본소득의 최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보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급 청구시 언제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국가보증 가상계좌’를 만들어 개인별로 부여함으로써 기본소득 보장에 대해 신뢰를 얻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기본소득금액도 물가상승율에 의해 연동하여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구매력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공유될 필요가 있다.

〈표 2〉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이용권

구분	제도설계	특성
표적집단	근로연령집단	
수급대상 및 자격	근로연령집단 누구나	보편성
수급조건	신청하면 무조건 - 단, 비유급노동시기 이용 (청년 직업준비기, 중장년 직업전환기, 가족돌봄 및 사회봉사, 학습 등 자기개발 및 재충전 등)	무조건성 (단, 비유급노동시기 이용) 자발적 신청포기도 가능
보장기간	4년 - 청년기 25-34세까지 2년까지 - 장년기 35-64세까지 2년 + 청년기 미사용기간	일정기간 제한 근로생애기간 40년의 10%
보장방식	월단위 정기적 현금급여	정기적, 현금급여
보장수준	- 하한선: 1인 생계급여 수준 중위소득 30% (52만원) - 중위소득 50% (86.5만원)	최소한의 충분성 보장하는 수준 이상에서 가 용예산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
소요재정	- 중위소득 30%: 19조 6,766억원 (GDP의 1.02%) - 중위소득 50%: 32조 7,313억원 (GDP의 1.71%)	보장수준에 따라 20-33조(GDP 1-2%) 소요 안정적 재정조달 위해 사회연대기금 조성, 제 도초기 3-5년치(100조 내외 확보) 선확보하 여 제도기반 안정 소득세 외에 소비세, 사회보장세 등 재원 다 각화 (디지털세, 데이터세 등 새로운 재원확 보 검토)
기술적 쟁점 및 의의	제도초기 제도지속가능성의 불신으로 제도초기 수급신청 쏠림 - 여야 정당-국민 뉴딜(New Deal) 을 통한 안정적 지속성 합의 - 투명성, 개방적 소통, 충분한 공유와 숙의를 통한 신뢰 형성 - 국가 보증 개인별 계정 지급 - 물가상승을 적용 구매력 보전	- 신뢰 확보 및 제도의 안정적 운영 - 자기주도적 혁신 및 사회적 효용 최대화 - 개인적 이해와 공동체 가치 조화된 도덕적시민

3)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제의 의미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이용권] 구상은 현재 한국의 사회보장체계가 직면한 한계를 보완하고 균열을 메꾸주는 점진적이고 온건한 접근이면서도 개개인의 안정적 기본생활을 기반으로 적극적 시민의 자유로운 도전적 행보를 지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실용적 대안이 될 수 있다.³³⁾ 안정을 기반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도전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이용권 제안은 4차 산업혁명이 이끄는 불확실하지만 상당한 기회를 담고 있는 발전적 미래에 부합하는 대안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필요와 제약을 결합한 창조물로이다. 현행 사회보장(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체계의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재정역량의 현실적 제약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한 것 으로부터 생애선택기간동안 기본소득이용권을 보장하자는 발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아동기본소득 등 인구집단에 대한 시민수당 같은 기본소득 제안들은 있었지만,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이용권은 기본소득을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되 수급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한 결과이다. 보편성, 무조건성, 충분성, 개별성, 현금성, 정기성 등 기본소득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건을 견지하면서도 사회변화 전환기의 필요를 채우고 자원제약의 한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명확한 고용관계 기반의 사회보험 방식의 확대로는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데 한계가 분명하고, 기존 사회보험방식에 수급조건 및 기여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접근은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 좋은 시민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업부조와 상병수당 등의 형태로 실업과 상병시 소득상실을 보장하는 방식의 접근은 좋은 시민으로 견인하는 정책적 접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³⁴⁾

또한 충분한 수준의 완전 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은 기존 소득보장체계와의 조정이 없는 한 막대한 재정소요로 현실적이지 않다. 완전기본소득을 도입하되 소득공제 및 세제 혁신과 복잡하

33) 제안한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제는 기본소득의 장점을 취하며 사회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전환기 보장장치로 제안하였다. 이 전환기를 거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보장형태가 반드시 완전한 기본소득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물론 낡은 사회보장체제를 고집하는 것도 답은 아닐 것이다. 우리 모두는 보다 열린 자세로 우리 앞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입체적으로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정책수단의 영향과 한계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창의적 해결책은 열린 자세로 우리의 딜레마적 현실에 착목하여 해결책을 궁리할 때 나온다고 생각한다.

34) 실업, 상병 등 소득상실 위험 규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도덕적해이 논란을 일으키고, 시민들과 정부 간 관계를 급여를 타려는 자와 도덕적 해이를 감시하는 자로 설정하게 되어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촉진하기 어렵다. 실업부조 및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서도 상당한 조세 투입이 불가피한데,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고 분절적인 소득보장체계의 전면적 혁신을 하는 접근은 효율성과 제도 합리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혁신의 폭이 크고 사회적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커서 사회적 대타협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이 정말 효과적인 분배방식이고 사회보장체제인가에 관해서도 보다 실질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배너지와 듀플로(2012) 등 행동경제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시민들의 반응과 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실패하게 된다. 이들은 정책실험을 강조하며, 증거기반 과학적 접근을 통해서만 우리의 무지, 타성으로 가려져있던 변화를 가능케 하는 작은 스위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을 강조했다.³⁵⁾ “좋은 의도만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 수는 없다.” 이들이 시사하는 중요한 교훈은 아무리 가능성이 작더라도 시도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하고 정형화된 일반적 접근에서 벗어나 현장기반의 세밀하고 다양한 변용적 접근에 대한 개방적 수용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사전 정책실험이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제는 정책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 정책실험으로서도 의미를 가진다. 기본소득 정책실험을 통해 완전기본소득의 대안적 사회보장체계, 더 나아가 대안적 분배체계로서의 가능성과 실행상의 문제점과 한계를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이 미래 정책대안으로서 검토할만한 가치는 충분한지만, 사회적 공론화와 충분한 소통, 그리고 신뢰와 공동체 배려에 대한 사회적 학습이 가능한지 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적극적 시민으로서 안정을 기반으로 새로운 학습과 도전을 하는 경험들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이 활용되도록 격려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부가 기본소득의 전제조건인 사회적 신뢰와 상호성을 높여 좋은 시민으로 만드는 넋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기본소득에 관한 정책질문들을 검증함으로써 정책실패를 최소화하고 정책효과를 최대화하는 데 있어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제는 좋은 정책인 동시에 좋은 정책실험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5) 실질적인 탈빈곤이 가능한 방향으로 합리적 선택과 행동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작은 스위치’를 찾는 데 과학적 실험을 동원하여, 연구자나 정책당국자의 이데올로기, 잘못된 신념, 그로 인한 현실에 대한 무지, 타성적 접근이 어떻게 빈곤정책의 실패를 가져왔는지를 실제 여러 국가에 걸친 개입 사례와 과학적 실험결과를 통해 보여주었다. 현장기반의 미시적이고 행동동기를 이해하는 섬세한 접근, 그리고 이데올로적 신념, 무지, 타성에 입각한 고집을 버리고 과학적 실험에 입각한 실증적인 접근을 강조했다(석재은, 2019b).

〈표 3〉 정책대안 비교

	전국민 고용보험	보편적 기본소득	안심소득제	생애선택(기간) 기본소득	근로저축계좌
수급대상	취업자	전국민 또는 일부집단	45%	25-64세 근로연령시민	근로연령 소득활동자, (근로연령시민의 약 80%)
수급자격	실업, 폐업	무조건적	소득조사	무조건적 (비유급노동시, 선택적 포기)	취업준비, 실업, 폐업 및 근로기록연계
급여수준	기존소득비례 50% 상하한 적용	다양 (30만원/50만원)	기초보장~기본보장 사이 (4인가구 최소 3000만원 ~ 최대 6000만원) * 4인가구 기준 연소득 6000만원 미달가구에겐 부족분의 50% 현금지원	다양 (52만원/ 86.5만원) *생존수준 급여	다양 (100만원/ 150만원) * 기본보장 급여
급여단위	개인	개인	가구	개인	개인
수급기간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한시적 (48개월) * 여건변화에 따라 기간 증가 가능	한시적 (근로기간 연동: 선지급 12개월, 근로 1년에 1개월, 최대 총 48개월 가능)
다른 사회보장 제도와의 관계	대체 없음	병행 가능, 부분 대체 가능, 현금급여 대체 가능	생계급여, 자활급여, 주거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대체	청년수당, 실업부조 대체	청년수당, 고용보험구직급여, 실업부조 대체
행정부담	신청-심사-지급	신청-지급	과년도 소득기준 국세청 지급	신청-지급-수급기간 관리	신청-근로이력 관리-지급-총수급기간 관리
소요재정	20조(?)	182조, 303조	77조	19.6조, 32.7조 (청년수당 및 실업부조 대체)	최대30.4조, 45.6조 (청년수당, 구직급여 및 실업부조대체)

자료: 필자 작성

■ 참고문헌 ■

- 강남훈 (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 박종철출판사.
- 권순원 (2020). COVID-19 시대 고용안전망 확충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 사회정책연구회 발표자료(2020. 6. 13).
- 권혜자 (2020). 코로나 위기와 여성 고용동향 시사점. 전환의 시대 젠더와 노동포럼 발표자료집(2020. 6. 18).
- 금민 (2020).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동아시아.
-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2018).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사회평론아카데미.
- 김동택(역) (2003). 지구화, 야누스의 두 얼굴. Bauman, Z. (1998). *Globalization: The Human Consequences*. 한길사.
- 김용하, 김교성, 김태일, 석재은, 최영준, 홍경준 (2017). 한국사회의 균열과 복지체제의 재구성. 한국조세연구원.
- 김용하 (2018). 새로운 정책은 기존 토대에서 가능한가. 2018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김용하 (2020). 한국형 기본소득의 구상. 보수와 진보, 기본소득을 논하다 제주연구원 주최 사회안전망 4.0 포럼 주관 기본소득 토론회자료집.
- 김원식(역) (2011). 지구화 시대의 정의: 정치적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상상. Fraser, N.(2008). *Scales of Justice: Reimagining Political Space in a Globalizing World*. 그린비.
- 김원식, 문정훈(역) (2014). 분배냐, 인정이나?: 정치철학적 논쟁. Fraser, N, and Honneth, A. (2003). *Umverteilung oder Anerkennung? Eine Politisch-philosophisch Kontroverse*. Suhrkamp Verlag Frankfurt and Main. 사월의 책.
- 김태호(역) (2014).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 Standing, G. (2011) *The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박종철출판사.
- 김혜진 (2020). 여성관점에서 본 코로나19 고용대책. 전환의 시대 젠더와 노동포럼 발표자료집(2020. 6. 18).
- 박용진, 전용범, 최정규(역) (2020). 도덕경제학: 왜 경제적 인센티브는 선한 시민을 대체할 수 없는가. Bowles, S. (2016) *The Moral Economy: Why Good Incentives Are No Substitute for Good Citizens*. 흐름출판.
- 박기성, 변양규 (2017). 안심소득제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40(3). 57-77.
- 백승호, 이승윤 (2018).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한국사회정책 25(3). 37-71.
- 백승호 (2020). 긴급재난지원금이 낡긴 기본소득 논쟁의 쟁점과 과제. 복지동향 261호.
- 변양규 (2017). 안심소득제의 소득불균등 완화효과 및 소요 예산 추정. KERI Insight 17-05.
- 서상목 (2020). 기본소득제 찬성, 단 복지제도부터 가치치기 다 해야. 주간동아.
- 석재은 (2017). 행복한 사회의 조건: 인구가족의 위기와 사회적 회복탄력성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2017. 5. 19).
- 석재은 (2018a).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제안의 평가와 과도기적 기본소득의 제안: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용권. 보건사회연구 38(2). 103-132.
- 석재은 (2018b). 돌봄정의(Caring Justice) 개념구성과 한국 장기요양정책의 평가. 한국사회정책. 25(2). 57-91.

- 석재은 (2018c). 한국 사회보장의 재구성을 위한 제안. 2018 사회정책연합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집(2018. 10. 12).
- 석재은 (2019a). 누구에게나 '안식년'을 주자: 청장년 기본소득 자유이용권 제안. LAB2050 [IDEA2050_008].
- 석재은 (2019b). 서평: 빈곤정책의 과학적 접근과 현장기반 미시적 설계의 제안.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5(2). 247-256.
- 석재은, 김용하 (2019c). 저출산·고령화와 한국의 연금개혁. 아산연구총서 450집. 집문당.
- 석재은 (2020). 서평: 좋은 시민을 만드는 좋은 정책은 어떻게 가능한가? 한국사회복지학 72(3). 216-221.
- “실업급여 반복 수급, 근로의욕 떨어뜨릴까? 고용부, 실태 조사”. 중앙일보. (2020.8.2.)
- 안효상(역) (2018). 기본소득: 일과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Standing, G. (2017) *Basic Income*. 창비.
- 양재진 (2018).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한국사회정책. 25(1). 45-70.
- 양재진 (2020). 긴급재난지원금 이후: 기본소득, 정책적 효용성 따져봐야. 복지동향 261호.
- 오건호 (2020) 기본소득보다 전국민사회보장. 기본소득,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인가. 한국사회복지학회 기본소득웹 세미나 자료집. 2020. 8. 21.
- 유종성 (2018).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정책. 25(3). 3-35.
- 유종성 (2020). 생애맞춤형 전국민 기본소득제의 필요성과 실현방안. 한국복지국가연구회 편, 『촛불 이후 한국 복지국가를 묻는다』. 한울.
- 이상이 (2020). 좌파 기본소득·우파 기본소득을 모두 반박한다. 프레시안.
- 이순희(역) (2012).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Banerjee, A. and Duflo, E. (2011). *Poor Economics*. 생각연구소.
- 이어령 (2011) 이어령의 80초 생각나누기: 모기장. www.youtube.com/watch?v=rIRk9hrrLu4
- 이원재, 윤형중, 이상민, 이승주 (2019).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 모델 제안. LAB2050.
- 이일수(역) (2005). 액체근대. Bauman, Z. (2000). *Liquid Modernity*. 강.
- 인디고연구소 기획 (2014). 지그문트 바우만 인터뷰: 희망, 살아있는 자의 의무. 궁리.
- 장지연, 홍민기 (2020). 전국민 고용안전망을 위한 취업자 고용보험. 사회정책연구회 발표자료집(2020. 6. 13).
- 전용복 (2019). 현대화페이론은 왜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는가. Newstof.
- 조현진(역) (2016).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Van Parijs, P. et al. (1998). *Real Freedom for All*. 후마니타스.
- 최영준. (2019). 강압에 굴복하지 않는 시민이 되는 방법. LAB2050.
- 최영준, 윤성열 (2019). 자유안정성을 위한 기본소득 실험: 새로운 사회경제체제를 위한 도전. 정부학연구. 25(1). 5-41.
- 최한수 (2019). 기본소득 모의실험 : 근로 연령대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연구. 8(2). 1-32.
- “코로나 시대의 4계급, 당신은 어디에 있나”. 경향신문. (2020.4.27.)
- 통계청 (2020).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index/index.do>
- 홍경준 (2020)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세 가지 이유. 기본소득, 한국 복지체제의 대안인가. 한국사회복지

학회 기본소득웹이나 자료집. 2020. 8. 21.

- 홍기빈(역) (2018). 21세기 기본소득. Van Parijs, P. et al. (2017). *Basic Income*. 흐름출판.
- 홍성태(역) (2006).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Beck, U. (1986).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새물결.
- 홍찬숙 (2015). 개인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홍찬숙 (2016). 올리히 백. 박영률.
- 홍찬숙 (2017). “압축적 근대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정덕 등. 한국의 압축근대 생활세계. 지식과 교양.
-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9).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 Berg, J., Furrer, M., Harmon, E., Rani, U., &Silberman, M. S., (2018). *Digital labour platforms and the future of work: Towards decent work in the online world*,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Esping-Andersen, G. et al.(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 Kingdon, J. W. (1984).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Boston: Little, Brown and Co.
- OECD (2017). *Basic Income as a policy option*. Paris: OECD
- Offe, C. (1997). Towards a New Equilibrium of Citizen’ Rights and Economic Resources?. in Robert E.Goodin and Deborah Michell(eds.), *The Foundations of the Welfare State*, Volume I , An Elgar Reference Collection. 87-114.
- Offe, C. (2000). The German Welfare State: Principles, Performances and Prospective after Unification. Thesis Eleven, 63. 11-37.
- Standing, G. (2002). *Beyond the New Paternalism: Basic Security as Equality* . London and New York, Verso.

◀ Abstract ▶

A Proposal of Basic Income during the Lifetime Selection Period

Jae Eun Seok*

The basic income for the lifetime selection period is a system that unconditionally guarantees the right to receive the minimum and sufficient basic incom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selected by oneself during the working life. The concept of basic income use rights during the lifetime selection period is a necessary system in the transition period. It is a gradual and moderate approach that complements the limitations and fills the cracks faced by the current Korean social security system, and contains a forward-looking value that supports real freedom and challenging actions as active citizens based on the stable basic life of each individual. It also contains the government's nudge role to lead moral citizens rather than moral hazard while supporting the real freedom of individuals in the face of increased anxiety due to personalization of risk. In the sense that it enables the challenge as a free and creative active citizen based on stability, the proposal of the right to use basic income for the lifetime selection period can be an alternative to the developmental future that contains the uncertain but considerable opportunities l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addition, while the basic income for the lifetime selection period is well harmonized with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ystem, it can contribute to a good policy experiment for the future social security and distribution system by scientifically verifying various issu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basic income.

Keywords: basic income, personalization, moral citizen, active citizen, nudge

◆ 2020. 7. 15. 접수 / 2020. 8. 17. 1차수정 / 2020. 8. 17. 게재확정

* Professor of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llym University